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30

발의연월일: 2021. 5. 6.

발 의 자:윤한홍·강민국·권성동

배준영 · 서병수 · 서일준

양금희 • 유경준 • 유창현

이명수 · 이종성 · 정찬민

지성호 • 태영호 • 한무경

의원 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15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에 따르면,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.08%임.

이처럼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택보유 국민의 재 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있게 조정,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2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: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00분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
- 4.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: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20 에 해당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)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22조(세 부담의 상한) (생 제122조(세 부담의 상한) (현행과 략) 같음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1. • 2. (생 략) 3.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3.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•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 원 이 택의 경우: 해당 주택에 대한 하인 주택의 경우: 해당 주택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 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30에 해당하는 금액 분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 <신 설> 4.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•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의 경우: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 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

20에 해당하는 금액